

예산총칙

한나그린힐요양원 2024년 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제1조 한나그린힐요양원 2024년 특별회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68,092,000 원으로 한다.

제2조 1.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2.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관항목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운영총당 적립금	운영총당적립금	12,000,000 원	12,000,000 원	12,000,000 원
	잡수입(적립금)	500,000 원	1,000,000 원	999,859 원
	전년도이월금(적립금)	14,865,141 원	14,865,141 원	14,865,141 원
환경개선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30,000,000 원	30,000,000 원	17,000,000 원
	잡지출(적립금)	860,000 원	1,500,000 원	1,000,738 원
	전년도이월금(준비금)	120,627,000 원	122,226,262 원	122,226,262 원
총계		177,853,000 원	181,591,403 원	168,092,000 원

※ 세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변경내용	
운영총당금	50만원*2구좌*12개월
환경개선준비금	100만원*13회, 50만원*8회 적립

3.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	항(목)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운영총당 적립금	운영총당적립금	12,000,000 원	0 원	0 원
	예상이월금	14,366,000 원	27,865,141 원	27,865,000 원
환경개선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30,000,000 원	40,000,000 원	28,701,000 원
	환경개선잡지출	60,000,000 원	0 원	0 원
	예상이월금	61,487,000 원	113,726,262 원	111,526,000 원
총계		177,853,000 원	181,591,403 원	168,092,000 원

※ 세출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출변경내용	
운영총당적립금 지출	사용계획 없음
환경개선준비금 지출	외벽보수, 누수보수, 나눔숲 관리, 소방설비 보수

제3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한다. 단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 ①항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항·목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